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 박주민·강훈식·김한규

정성호 · 이용우 · 박정현

김 윤·안태준·송재봉

황명선 · 김우영 · 이성윤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됨으로써,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진 바 있음.

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,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,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,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, 제10조의2).

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) 특별사면과 감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.

- 1.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
- 2.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법무부장관"을 "대통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구성한다"를 "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공무원이 아닌 위원의"를 "위원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제2호 중 "심의서는"을 "심의서 및 회의록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까지에서"를 "제8항까지에서"로, "법무부령으로"를 "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- ③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,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국회와 대법원장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출 또 는 지명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3조(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지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행위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사면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

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승계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조의2(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
	한) 특별사면과 감형은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사람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
	<u>다.</u>
	1.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
	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
	족관계에 있는 사람
	2.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
	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
	원이었던 사람
제9조(특별사면 등의 실시) (생	제9조(특별사면 등의 실시) ①
략)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하
	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과
	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
	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의2(사면심사위원회) ① 제	제10조의2(사면심사위원회) ① -
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, 특	
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	
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	
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	<u>대통령</u>
면심사위원회를 둔다.	

-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② -----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-----구성한다.구성한
-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이상 위촉하여야한다.
- ④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의</u> 임기 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.

### <신 설>

-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 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 되,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 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 리 의결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
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
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
<u>다</u> .
③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
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3명
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, 3
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
람을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④ 위원의
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  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  ⑥
1. (현행과 같음)

- 2. <u>심의서는</u>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
- 3.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 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 부터
- ⑥·⑦ (생 략)
- 8 제1항부터 <u>제7항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 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법무부령으로</u> 정한다.

2. <u>심의서 및 회의록은</u>
<u>&lt;삭 제&gt;</u>
<u>⑦・⑧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
과 같음)
⑨제8항까지에서

대통령령으로----.